

# 「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노동자 쉼터의 원활한 유지·관리를 위한 이용자 준수 사항을 규정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  - (신설)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, 급식 지원 등
- 나.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다.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  - 보조금 지원 근거 명확화
- 라. 용어 및 문장 정비(안 제4조, 제6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, 제95조의2
  - 「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」 제66조의2
  -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 제2조, 제3조, 제37조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이용자 준수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안 제5조에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을 ‘예산의 범위 내에서’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, 산재보험료 및 급식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안 제7조에 쉼터 이용자 준수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쾌적한 쉼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관련부서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